

제 257회 임시회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7. 2. 23. (금)

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간
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간

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2월 15 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2월 15 일

3. 제안 이유

- 중국 동북부지역(흑룡강성)에 편중되어 있는 교류관계를 중국 서남부 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정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對중국 교류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경제적·문화적 가치 추구
- 광서장족자치구는 중국의 아세안 10개국 진출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우리 도가 향후 아세안 10개국과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
- 광서장족자치구와 우리 도는 2001. 6. 7 우호협력교류의향서 체결 이래
 -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간중 광서장족자치구 정부사절단 및 기업대표단 파견
 - 2004~2005 CHINA-ASEAN EXPO에 우리도 대표단 참가
 - 2005년 광서장족자치구 이금조(李金阜)부주석 우리 도 방문

양지역 경제협력협약 체결 등

- 그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현재 교류의 최고 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 되었다고 판단되어,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하고자 함

4. 추진경위

- '01. 6 조남기 중국 前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주선으로 양지역 **우호협력교류의향서 체결**
 - 장 소 : 서울, 서명자 : 유의재 행정부지사 ↔ 張文學부주석
- '02. 9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간중 축하사절단 및 기업대표단 방도
- '03. 12 광서장족자치구 외사판공실 관계자 등 실무대표단 방도
- '04. 6 행정부지사 광서장족자치구 방문 우호교류 증진방안 모색
 - ⇒ **광서장족자치구 장문학부주석 양지역 자매결연체결 제안**
 - ※ 우리 정부는 2000년 1국가 1지역 자매결연체결 조항을 폐지, 현재 외교통상부는 중국과의 2개지역이상 자매결연체결에 대해 긍정적임
- '04. 11 제1회 「CHINA-ASEANEXPO」 우리도 대표단 참가
- '05. 4 양지역 **경제협력협약 체결**
 - 장 소 : 충청도청, 서명 : 김영호 행정부지사 ↔ 李金孚부주석
- '05. 8 광서자치구 청소년대표단 우리도 방문연수 : 6일, 11명
- '05. 10 제2회 「CHINA-ASEANEXPO」 우리도 대표단 참가
 - ※ **CJB 청주방송과 광서TV 자매결연체결 : 2005. 10**

5. 주요내용

○ 자매결연체결

- 체결예정 : 2007년 6월 예정
- 체결장소 : 광서장족자치구 남녕시
- 체결방법 : 충청북도 대표단(도지사외)방문 협정서 서명·교환

○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내용

-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,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로 합의
- 공무원·경제·농업·임업·대학·청소년·체육·문화 및 각종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상호 공동발전 도모
- 항상 상호연락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

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은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무원·경제·농업·임업·대학·청소년·체육·문화 및 각종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상호 공동발전 도모를 통하여 자치단체 간 비교우위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나,
-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1인당 GDP 746불의 광서장족자치구와의 경제정보 교류 및 무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

부분은 당분간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우리 도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 및 약 32배에 달하는 인구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어,
- 향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중국과 타 자치단체와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중국 서남부지역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교류 거점확보 측면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련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5조의 5 (교류협력의 범위) 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 “교류협력”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을 말한다.

□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

제6조(자매결연의 체결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